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38
------------	-----

제출일자 : 2012. 10.
제출자 : 중구청장

1. 개정사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완하고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육사업의 확대와 보육제도의 변화 등 다변화된 보육환경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는 보육정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함(안 제3조)

-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의 구성에 있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보육 전문가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 100분의 15 이하 등 구성비율을 반영함(안 제4조)
- 나.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있어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과 변화된 보육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보완함(안 제10조)
 - 1) 2012. 2. 3 법 개정사항을 반영,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함
 - 2) 위탁대상은 현재 반구어린이집 외 3개소이나, 향후 위탁대상은 신설을 감안하여 구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함
 - 3) 수탁자 선정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중구보육정책위원회나 중구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함
- 다. 법 제7조에 따른 시·군·구 의무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안 제21조)
 - 1) 정보센터 내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함(안 제21조)
 - 2) 보육정보 제공과 상담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산원·영양사·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음
- 라. 위탁계약 시 필요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서” 안을 기존 안에서 일부 보완하여 첨부함(별지 제1호서식)

3.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없음
- 다. 기타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사항 :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2. 9. 18부터 2012. 10. 8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없었음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중구 보육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중구 보육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울산광역시중구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의한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의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및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자격 및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개정이전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개정 이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

용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할 경우
 8. 제4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9.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명은 울산광역시중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 등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제1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어린이집의 명칭)
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제12조(위탁대상)
구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한다.
- 제13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제14조(수탁자의 자격 등)
① 제13조에 따라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울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보육을 전담하는 등록 사회복지법인
 2. 울산광역시 내에서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4. 법 제2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울산광역시 거주자
- 제15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①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 제외대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② 수탁자의 선정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선정 시 위원회나 울산광역시 중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중구 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한다.
- 제16조(위탁 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탁된 자의 계약기간은 전임 수탁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재위탁 계약을 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비 등) ① 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보육료로 한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1. 어린이집 운영비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③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성실한 운영으로 관내 영유아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19조(운영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법 시행규칙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때
- 제20조(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사안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하거나,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 제21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이나 상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보육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센터 내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센터를 공공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포함), 보육 관련 학과 개설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제22조(기능) 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나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이나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나 지도
 7. 보육정보 전산망 구축과 홍보
 8.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제공
 9.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3조(구성) ① 정보센터에는 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영양사·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정보센터의 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보센터를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정보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제2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보센터의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52회-본 회의 제2차부록)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중구 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서(제15조제3항과 관련)

어린이집의 물건 표시	명 칭	○○어린이집			
	위 치	울산광역시 중구 ○○○ (○○○동)			
	규 모	대지 : m ² ,	건물 : m ² ,	정원 : 명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위 어린이집의 소유자(또는 공립어린이집 유치 목적의 임차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 . . 부터 . . . 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로 보궐 수탁된 원장의 계약기간은 전임 수탁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조(보육대상) “을”이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아동은 만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입소 우선순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보건복지부의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 5 조(수탁자의 의무 및 운영방법) “을”은 수탁 받은 어린이집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보육 관계 법령과 “갑”的 행정요구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2. “을”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갑”的 소유로 귀속하며, 어린이집에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3. “갑”的 각종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이 입증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보육교직원과 입소아동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을”的 책임으로 한다.
5.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은 “갑”을 피 보험인으로 하여 “을”이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 6 조(보육료 등) “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갑”에게 알리고,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고한다.

제 7 조(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07:30~19:30분까지 하되, 토요일은 07:30~15:30분까지 한다.

- ② 일·공휴일은 보육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육을 하지 않는다.
- ③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시간을 “을”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관리)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가 법인일 경우 어린이집원장은 “갑”的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

제 9 조(운영비 보조 등) ① “갑”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을 받은 “을”은 관계법령 및 “갑”的 조례 및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연간 경영수지 결산 결과 발생한 결손액은 “을”的 부담으로 하고,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어린이집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및 기계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

(제152회-본회의 제2차부록)

일 전까지 개·보수 대상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물 및 건축설비 개·보수 결과’는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제출시 결산서 보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지도감독) ①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1 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집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설정 행위
 3. 각종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4. 시설물의 원상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재산의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 12 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을”이 조례 제7조와 계약서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을”이 본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 어린이집의 연평균 보육아동이 정원의 80% 이하일 경우
 -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 공익상 시설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때
 - “을”이 질병, 출국 등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수탁운영 할 수 없을 때
 - “을”이 시설물 개보수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 13 조(시설물 인도) 계약의 종료 및 해지된 때에는 “을”은 시설물(비품, 교육교재, 회계서류, 각종 공부 등 포함) 일체를 자체 없이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14 조(대표자의 변제능력 입증) ① “을”은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기간 동안 대표자의 자산 부채비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부채비율 확인을 위하여 대표자의 자산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책임의 한계) “을”은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6 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이 계약서의 계약문안은 “갑”的 해석에 따른다.
④ 이 계약의 효력은 년 월 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을 : 울산광역시 중구 ○○○(○○동)

○○○○직 성 명 (인)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38)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10. 9.(화)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2. 10. 12.(금)
- 위원회심사 : 2012. 10. 17.(수)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복지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완하고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육사업의 확대와 보육제도의 변화 등 다변화된 보육환경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구성에 있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 100분의 15 이하 등 구성비율을 반영함(안 제4조)

○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있어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과 변화된 보육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보완함(안 제10조)

- 2012. 2. 3 법 개정사항을 반영,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함
- 위탁대상은 현재 반구어린이집 외 3개소이나, 향후 위탁대상은 신설을 감안하여 구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함

• 수탁자 선정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중구보육정책위원회나 중구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함

○ 법 제7조에 따른 시·군·구 의무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안 제21조)

- 정보센터 내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보육정보 제공과 상담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산원·영양사·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음

○ 위탁계약 시 필요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서” 안을 기준 안에서 일부 보완하여 첨부함(별지 제1호서식)

4.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진만)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보육정책 추진과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 제5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